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2021. 2. 15.

은빛초등학교

목 차

T 개 9

- 1. 학교계획
- 2. 학교계획 추진현황
-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Ⅱ. 세부 추진 계획

-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 3. 교육활동 안전 강화
-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 5.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 6.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임]

- 1. 2021학년도 은빛초 교직원 비상***(2021.3.)
- 2.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3.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 4.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5. 학생 생활지도 지침
- 6. 2020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 7.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별점]** : 학교안전 관련 자료 -------------

- 1. 은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전교육과정 (2021학년도)
- >> 출처: 은빛초병설유치원교육과정
- 2.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안전대책
- >> 출처: 경기(2013) 안전교육길라잡이
- 3. 안전사고 관리지침
- >> 출처: 연구진 작성
- 4.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제도
- >>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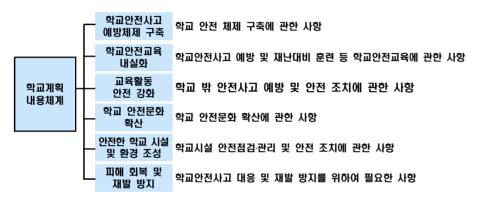
개 요

1. 학교계획

가, 학교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나. 학교계획의 내용 체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위 내용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 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작성

다.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2. 학교계획 추진현황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기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2020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연도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18.3.	2018				7	1	8	17		
~	2019				19	8	27	53		
2021.2	2020	50	11	61	50	11	61	100		

-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 교직원 수는 2020학년도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 교육활동참여자의 경우 학교 자체 연수로 이수. (연 1회 이상 모두 이수함.)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 2020년)

	교육대성	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실시비율(%)		
한색	교직원 수			한생			현색	교지위	
학생 (A)	교원	직원	소계 (B)	학생 (C)	교원	직원	소계 (D)	학생 (C/A)	교직원 (D/B)
1003	50	11	61	1003	50	11	61	100	100

- ※ 교육대상 인원수는 2020학년도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습 기반의 의무교육시간 이수가 유예됨.
 ※ 재난대응훈련 시 비대면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체험식으로 운영함.
- ※ 보건교육 시간(5학년) 및 관련 교과 시간(1~4학년, 6학년)에 연계하여 지도함

3) 안전영역별 ·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20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æ	과	이수시간						
안전영역(2020 필수이수시간)	i학기	2학기	계						
생활안전(10)	7	3	10						
교통안전(9)	5	4	9						
폭력 및 신변보호(3)	7	2	9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5)	6	2	8						
재난안전(5)	2	3	5						
직업안전(0)	1	1	2						
응급처치(1)	1	1	2						
계(33차시 이상)	29	16	45						

- ※ 위 표는 교육부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2016-90호 의무 이수시간에 따라 작성한 것임.
- ※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 2020학년도 기준 필수 이수시간: 생활안전(10시간), 교통안전(9시간), 폭력 및 신변보호(3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5시간), 재난안전(5시간), 직업안전(0시간), 응급처치(1시간)

유치원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교	과	이수시간
안전영역(2020 필수이수시간)	1학기	2학기	계
생활안전(최소 1차시)	4	5	9
교통안전(최소 1차시)	5	5	10
폭력 및 신변보호(최소 1차시)	3	2	5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최소 1차시)	4	4	8
재난안전(최소 1차시)	2	3	5
직업안전(최소 1차시)	0	1	1
응급처치(최소 1차시)	1	0	1
계(51)	19	20	39

[※] 위 표는 교육부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2016-90호 의무 이수시간에 따라 작성한 것임.

나.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붙임 4]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2021학년도)

**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지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 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우리 학교 학교와 주변 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학교 주변에 공사 현장이 위치하여 안전한 등학을 위한 교통안전 수획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매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계획 연수를 시행.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6월에 실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제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을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	도 추진	실적	계획수립	
고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여혈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점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 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기본병향 및목표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시획 본 학교인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매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계획 연수를 시해.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6월에 실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을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TE	7 7	게구심심대중	0	Δ	×	0	×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 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인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학교 주변에 공사 현장이 위치하여 안전한 등학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매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계획 연수를 시행.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6월에 실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개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을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 '	0			0	
1. 예방정책의 기본생항 및 목표 의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 기본계획, 학교 주변에 공사 현장이 위치하여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의 지속적 교육이 필요.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매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계획 연수를 시행.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6월에 실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전국 구등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학자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제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 ' '	0			0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기본방향 및 목표 의제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목표 의				0			0	
* 매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계획 연수를 시행.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6월에 실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역계획,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학교 주변에 공사 현장이 위치하여 안전한	0			0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재난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목표		※ 매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계획 연수를 시행.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0			0	
2 교육 활동				0			0	
운영의 학교안전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2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전국 공통 훈련 일정을 기준으로 학교 차원의	0			0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운영의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2회로 분할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 제고.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실습	0			0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0			0	

28	Od Od	벱저것IUO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0	Δ	×	0	×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한 상시 지도. [7대 안전영역이 고르게 반영된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학급 내 지도] ** 학교안전사고 예보 자료를 활용한 상시 지도. (월별로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0			0	
	외부 체험 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안전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0			0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2020학년도 2학기 화재 대피 훈련 시, 관할 소방서 훈련통제관 참관하에 비대면 합동훈련 실시함.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청각자료를 통한 간접체험훈련으로 운영.) ※ 2021학년도에도 합동훈련 실시할 계획.	0			0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함.	0			0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 (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학기 초, 건강조사 안내문을 통해 요양호자 명단을 파악하고, 교직원 대상으로 요양호자관리에 대한 연수를 시행.	0			0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0			0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0			0	
	예방 및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방훈련 및 재난대응 훈련 심시할 계획.	0			0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되었는가?	0			0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0			0	
3. 학교 안전교육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2021학년도 교과 연계 방법은 본교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수립. (2월~3월)	0			0	
		악교 시청을 고려하여 악단일도 구립.(2월~3월)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0	<u> </u>		0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			0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0			0	
	정기훈련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0	
	0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0			0	

^{※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저녀	도 추진	l 신 정	계획	수리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 용	0		×	0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훈련계획 수립 및실시 [매년 1회 의무 실시] ※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실습 기반의 의무 교육이 유예됨. (재난대응훈련 시간접체험식 훈련으로 교육) ※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예정. 	0			0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			0	
4. 학교시설 안전점검 ·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매월 4일 학교시설 안전점검.	0			0	
관리 및	안전관리 (제7조) 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0			0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0			0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0			0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0			0	
5.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0			0	
학교 안전문화 확산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각종 안전 관련 사항 홍보.	0			0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0			0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0			0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학교홈페이지에 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탑재.	0			0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학교명	은빛초		설	립 구분	2	공립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42번길 6						
전 화	031-8085-7001	FAX	031-8085-7	099	흠ㅍ	ᅨ이지	http://sheunbit.es.kr	
교 장	김**	학교안전책임관				우**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2021년 3월 기준)

▶ 은빛초등학교: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명)	375	325	275	276	196	181	1628

▶ 은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	만 3세	만 4세	만 5세	합계
(명)	16	22	26	64

▶ 은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교직원	교원	직 원	합계
(명)	82	31	113

※ 학생 및 교직원 현황은 2021년 3월 문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함. (추후 변경 사항은 상시 수정)

3) 학교 비상연락망

○ [붙임 1] 은빛초 비상연락망 - 교무실 및 행정실 별도 보관

& 은빛초등학교 비상연락망(2021.03.01.) &

▶ 교장실 031-8085-7000 ▶ 교무실 031-8085-7001~4 ▶ 행정실 031-8085-7005~9 ▶ 교무실 FAX 031-311-7005

	▶ (우 14922)	시흥시 은	계로 142번	길 6	• <u>http://</u>	/sheumbii	es.kr		▶ 행정실	! FAX 031-	8085-709
						교장						
	i i	교감1			교감2						행정실장	
백년	18	년	28	I 반년	38	년	4≅	면	5학년	6학년	뮤치원	행점실
_				Contract Contract		120000	-					

			#O!									ooco	40
ДI~	핵년	18	백년	2	T 확년	3	T IFE	4	T 확년	5학년	6학년	유치원	행정실
1	8	1-1	1-8	2-1	2-8	3-1	3-8	4-1	4-8	5-1	6-1	췟빛	계약
2	9	1-2	1-9	2-2	2-9	3-2	3-9	4-2	4-9	5-2	6-2	별빛	세출
3	10	1-3	1-10	2-3	2-10	3-3	3-10	4-3	4-10	5-3	6-3	달빛	급여
4	11	1-4	1-11	2-4	2-11	3-4		4-4		5-4	6-4	방과후 1	시설
5	12	1-5	1-12	2-5		3-5		4-5		5-5	6-5	방과후 2	행정
6	13	1-6	1-13	2-6		3-6		4-6		5 -6	6-6		교무
7	14	1-7	1-14	2-7		3-7		4-7		5-7			교무
										교담	교담		당직
J	담						교담	교담	교담	교담	교담		오전 배움터지킴(
=	수	두수	특수	득수						교담	교담		오후 배움터지킴(
비)	교과	영양	보건 1	보건 2	상담		과학	NH	돌봄 1	돌봄 2	돌봄 3	돌봄 4	n 8
급	식실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급식	
ê	직	휴직	휴직	휴직									

※ 개인정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

4)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붙임 2]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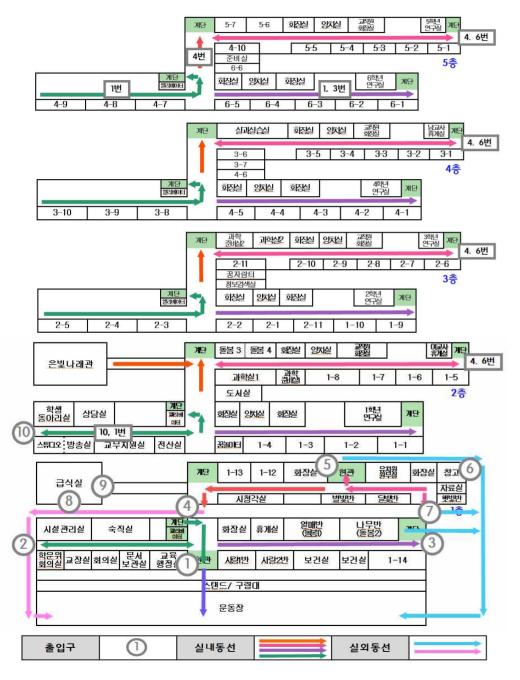
▶ 은빛초등학교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42번길 6



- ▶ 소방차 진입 경로 (은행 119 안전센터에서 은빛초까지 예상 소요 시간 8분)
- ▶ 은행 119 안전센터: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4 (☎ 031-310-0511)



2021학년도 은빛초 비상대피도



5)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행정실/관리)

-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행정실에서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한다.
-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 보완하고 캐비넷 보관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6)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행정실/관리)

○ 비상 시 재난대응기관 등의 교정, 건물, 교실, 시설물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가. 안전관리 추진 조직

□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의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 구성 가능

□ 유사시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나. 학교 재난대응 및 구성 · 운영 [사고현장 지휘소]



▶ 상황별 대응 단계



▶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조치 시간	확인자	비고
□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 상황보고 학교장 보고, 상급기관 보고			
 □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 언론 대용(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 현장대용반장- 현장대용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			
□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 교내지원반장- 학생 현황 파악- 장례(조문) 계획 수립- 학사일정 조정계획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관련문서 작성			
→ 상담지원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 행정지원반장-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학생 귀교 대책 계획			
□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다. 안전 관련 업무

- 학교 안전 관련 업무는 학교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직원이 협력하여 담당부서 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추진
- 업무 분장 시 부서 간, 교직원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정 권고

▶ 2021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참조

	직 책	임 무	Н Д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I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겸 안전책임관]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안전체옥부장 진로인성부장 방과후부장 학년부장	- 현장대용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종합(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용반 일지 작성) - 사안로면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교무기획부장 교무실무사 혁신연구부장 담임교사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행정 지원반	행정실장 행정실담당자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과학정보부장 안전담당교사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응급 구조	보건교사 전담교사	- 응급처치 - 의료지원	

▶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수단	보조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시흥시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컴퓨터 메신저, 비상연락망	육성, 호루라기, 이동전화 비상연락망	방송실, 교무 실

▶ 부서별 담당 학교 안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관련업무
	교무기획부	∘ 어머니폴리스, 학부모봉사관리
	혁신연구부	· 안전교육과정 운영, 체험학습 안전
	방과후부	· 방과후 부서 및 돌봄 교실 안전관리
교무실	진로인성부	∘ 학생 생활 안전교육 ○ 학생, 학부모 상담 운영
	과학정보부	∘ 과학실 안전교육 ∘ 정보통신윤리교육
	안전체육부	○ 행사 안전 ○ 학교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환경교육 ○ 보건교육 ○ 그시 · 영양교육
0	정실	○ 급식·영양교육 ○ 채난대응 교육 ○ 학교 시설 안전점검 ○ 학교 시설 안전관리 및 조치 ○ 소방, 가스, 전기, 승강기, 석면 안전관리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학교 주변 환경정화
	보호인력 러지킴이)	○ 학기 중 평일 오전, 오후 운영 ○ 교통 안전지도,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비상시 교직원 및 학부모(보호자)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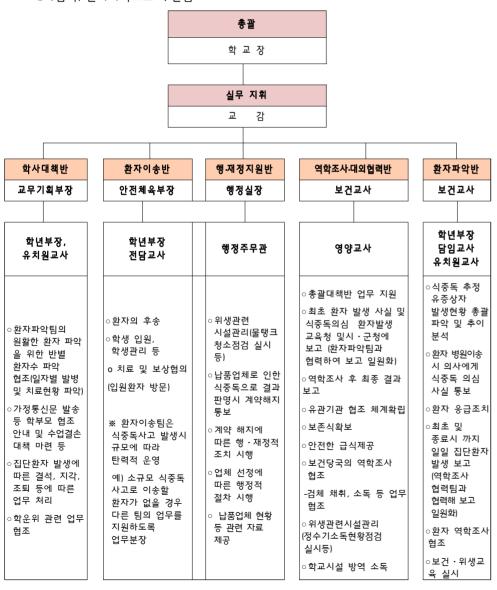
직책	임무
학교장	학교장은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교장은 항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 수준의 활동,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고지휘관 (교감/ 행정실장)	사고지휘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합니다.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지시합니다. ○ 재난대응 행동수칙(기능부속서와 재난유형별 상세부속서 참조)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합니다.(재난의 유형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과

	같은 재난대응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
	○ 학교장과 교육청의 관리자들에게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교사	교사는 학생지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결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행동 해야 합니다.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 재난대용 계획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서면, 교내방송, 인터콤, 개인휴대전화, 신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와 재난대용 계획에 따라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의 이동을 지도합니다.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을 실행지시합니다. ○ 건물 외부나 내부의 집합장소 또는 학교 밖의 지정된 대피지역의 학생의 인원을 확인합니다. ○ 실종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을 실행합니다. ○ 부상 학생이 보건교사나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에게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본교의 교직원들은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 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건교사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실행합니다.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실행을 감독합니다.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기능직원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건물관리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임합니다.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 또는 관련자에게 보고합니다.
용역업체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벨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직원 포함) 학생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합니다.
보호인력 보호인력	○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을 지원합니다.
(인전 지킴이)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과 시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직원 (주무관,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을 실행합니다.
실무사)	○ 학교장과 재난 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을 청취합니다.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식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담당자	○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 사고지회과 또도 사고지회체계 사이 간도자이 지시사하의 시해하니다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아래의 행동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정된 학생들은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 재난대응훈련은 물론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학생	○ 재난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 놓습니다.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방관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 제단 일정 정왕을 목격하는 경우, 명관자도 맹용하지 않고 이를 일러야 하는 것의 중요정을 이해합니다.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과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을 개발합니다.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신의 발달 단계를 고
	려하여 참여합니다.)
학부모/	이들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ㄱ · ㅡ, 보호자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받은 재난대응 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도록 합니다.
- 학교가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라.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영양교사)

○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환자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 대외협력, 환자파악으로 구분됨



마. 응급구조체계 조직(보건교사)

○ 응급처치 담당, 후송 담당, 행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구별됨



최초발견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연락 및 응급조치 시행									
	응급처치 담당자 : 최초 발견자, 보건교사								
	가까운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 기관								
구 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요시간	구급차	비고				
종합병원	신천연합병원	031-310-6300	13분	유					
정형외과	**정형외과	031-314-0505	7분	무					

- ※ 병원 이송: 증환자일 경우 담임과 보건교사가 동승하여 이송
- ※ 교내 응급환자 이송 차량 지정 운영
- 담임 수업 시 : 교장, 교감, 행정실장 협조

(교장, 교감, 행정실장 차량을 주 응급 이송차량으로 지정함. 선택요일제 운행제한대상 제외)

- 담임 비 수업 시: 담임 차량
- 차량이 적절치 않을 경우: 콜택시 이용
- 관찰자: 담임, 보건교사

- 18 -

바. 학교안전사고 대응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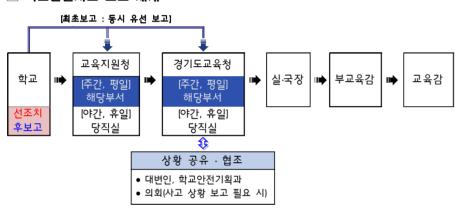
① 학교안전사고 대응

사고대응 일이삼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①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119에 신고 (심폐소생술 필요시 동시, 즉시 시행)
- ② 사고자 구조 (심폐소생술 즉시 시행, 2차 사고 예방 등)
- ③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
- *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② 학교안전사고 보고 체계



(학교)

-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해당과에 유선보고 후, 사안 보고서 제출
- 학교 보고 시기 및 방법 [3단계 보고]

구분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보고 사항
	화재 발생 파악 즉시	• 담당자에게 유선보고 ※ 문자송신 병행	• 재난발생상황보고 내용
① 발 생 보 고 	발생 원인, 피해내역,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상황 보고		• 화재발생상황보고서 ※ 학교현황, 사진 첨부
② 복 구 진 행	피해복구 추진사항보고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	• 공문시행	● 재해복구경과 보고서
③ 복구결과 보고	복구 완료 후 5일 이내		• 재해복구결과 보고서

[출처: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

▶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 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고방법 ◢

- 교육부 보고방법 : moell9@korea.kr 안전대표 메일(24시간 유지)
- 도교육청 보고방법 : 사안별 담당부서(부서장은 상황판단회의 요청 여부 결정)

□ 재난 · 안전사고 보고 시 주의사항

○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

- 최초 1회 사안 보고서 제출(의무)

※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 업무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

-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
- 최초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을 명시

□ 주요 사안별 담당 부서

사안명	전화번호[주간]	주관부서	비고 (협조 부세)
■ 급식 식중독 사고	031-249-0584~8	학 생 건 강 과	
■ 급식실 안전사고	031-249-0541~5	학 생 건 강 과	
다가 가여범 -	031-249-0292~5	학 생 건 강 과	
■ 보건, 감염병	031-820-0594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감염병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안전사고	031-820-0686~7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체육활동 안전사고	031-249-0277~81	학 생 건 강 과	
■ 학교운동부 사고	031-249-0286~9	학 생 건 강 과	
■ 교육시설안전	031-249-0926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과
■ 교육시설 붕괴	031-249-0928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과
■ 미세먼지	031-249-0922	교육환경개선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031-249-0926	교육환경개선과	
■ 과학실 실험·실습 사고	031-820-0673	융합교육정책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 사고	031-820-0606	미래교육정책과	
■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 사고	031-820-0604	미래교육정책과	
■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중 사고	031-820-0792	융합교육정책과	
■ 학교폭력	031-820-0757	학 생 생 활 인 권 과	
■ 학생 성희롱.성폭력	031-820-0767	학 생 생 활 인 권 과	
■ 교원에 의한 학교성폭력	031-249-0231	교 원 정 책 과	
■ 자살, 자살시도, 자해, 유괴·실종	031-249-0864	학 생 생 활 인 권 과	
┃ ■ 시결, 시결시도, 시에, 규의결중	031-820-0594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유괴·실종
■ 아동학대	031-249-0862	학 생 생 활 인 권 과	
	031-820-0594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 특수학교 안전사고	031-820-0782	특 수 교 육 과	
■ 유치원 안전사고	031-820-0594	유 아 교 육 과	
	031-249-0697	학 교 안 전 기 획 과	
■ 교통 및 통학 중 안전사고	031-820-0782	특 수 교 육 과	특수학교
	031-820-0594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
■ 외부인 무단 침입 학생 안전사고	031-249-0692	학 교 안 전 기 획 과	그 외 외부인 무단 침입 안전시고 작종별 관련 부서
■ 물놀이 안전사고	031-249-0691	학 교 안 전 기 획 과	
■ 자연재난, 화재, 방사능 누출, 승강기 사고	031-249-0683~4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과
■ 국지도발 및 테러	031-820-0699~0700	운 영 지 원 과	
■ 꿈의학교 안전사고	031-820-0904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꿈의대학 안전사고	031-820-0913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	031-820-0543~6	평생교육복지과	
■ 당직실(야간 및 공휴일)	031-249-0342		FAX)031-249-0362
	031-820-0514	북 부	FAX)031-821-1023

사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에서 대응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부서를 협조 부서로 지정하는 경우 협조 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의무적 협조

사.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대응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 (별첨 3 참조)

2) 재난 대응 지침

- 재난 발생 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19)" 을 참고하여 대피 실시 (붙임 2 비상대피도 참조)
- ▶ 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 → 안전 지침(법령) 및 매뉴얼 → 43번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2019.7.교육부) 참조 (붙임6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

3)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보건교사)

- 매일 보건일지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여 학생 처치 및 치료 상황을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건강관리 지도에 적극 활용함.
- 학기별 내부 기안

4) 특수교육대상자 안전 관리(특수교사)

- 은빛초 특수학급 안전교육 학교교육계획에 의함.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등 · 하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 후 폭력사안 및 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교사,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영위에 목적을 둔다.
- 연간안전 기도 계획

월	활동구분	활동 내용
3월	생활 안전 교육	- 아이들의 행동 중에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기 - 황사에 대해 알아보고 황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기
4월	교통 안전 교육	- 차를 탈 때와 차에서 내릴 때의 교통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방법 알기 - 동요 '건너가는 길'을 통해서 신호등의 색에 대한 안전수칙 알아보기 - 비오는 날의 위험을 미리 알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법 익히기
5월	재난 안전교육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발생 시 대피 행동요 령 익히기
6월	약물 오남용 안전 교육	- 올바르게 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기 - 더러운 손에는 온갖 병균이 있음을 알며,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 알기
7월	생활 안전 교육	- 안전하게 물놀이 하는 방법 알기 - 폭염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처방법 알기
9월	교통 안전 교육	- 바퀴달린 것을 탈 때는 안전수칙을 익히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타기 - 횡단보도가 없는 길 건너는 방법 익히기
10월	실종 유괴 방지 예방교육	- 기분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구별하기 - 낯선 사람에게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기 - 낯선 사람이 도움 요청했을 때 대처 방법 익히기
11월	생활 안전 교육	- 공공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알기 - 안전하게 전기 제품 다루는 방법 알기
12월	재난 대비 안전교육	- 폭설의 피해와 예방방법 알기 - 한파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처방법 알기
1월	소방 안전 교육	- 불이 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불장난이 위험하다는 것 알기 - 불이 났을 때 대처방법 알기

아.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피드백

○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학교안전계획에 반영

74	~~		전년.	도 추진	실적	계획	계획수립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0	Δ	×	0	×	
	기본계획, 지 역계획, 학교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1 41 41 74	계획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1.예방정 책의 기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본방향 및 목표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학사일정별 학 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2교 육 활동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운 영 의 기본지침	외 부 체 험 활 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 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계획에 게재하였는가?						
	학교주변 안전 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안전약자 안전 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51 77 01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3.학교안	저기하러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전교육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하교시서	매월 안전점검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의 날(제6조)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L		L	L		J	L	

78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	도 추진	실적	계획	수립	
구분	24	세구심검내용	0	Δ	×	0	×
및 안전조	조)실시	계획•실시 하였는가?					
치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 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5 . 학교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안전문화 확산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안전교육담당자]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

-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교직원들은 학사일정별 안전 관리에 있어 부여된 역할에 따라 적극 협력하여 안전업무 추진
- 학사 일정에 의한 안전관리 연간 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불임 3]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2021학년도)

2021학년도 안전관리 연간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안전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3월	신입생 입학식 및 재학생 시업식 학부모총회 친구 사랑 교육 주간		감염병 예방 수최 상시 지도 신학기 교내 생할 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안전교육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에보 3월호	학교안전교육계획 설명(총회) 학교안전교육계획 연수(교직원) 민방위 훈련(화재) 예정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장애 이해 교육 주간, 스마트폰 과잉의존 예방 주간 등	현장체험학습 (2021학년도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예보 4월호	황사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5월	학생 건강체력 증진, (신체발달 PAPS 측정) 소방안전교육	학사일정에 따라 추후 수정)	재난대비 안전교육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예보 5월호	민방위 훈련(복합) 예정 소방 훈련(예정)	매월 안전점검의 날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상 활동 안전수칙 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6	얼	동일 교육 주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중절 쓰짝 구인		학교안전사고예보 6월호		실시(1차)
				여행, 폭염 대비,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 안전수칙 지도		
7	열	여름방학		방학 중 생활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예보 7월호		
				식중독 예방수칙 지도		
	~	0-1-11-11-11		신학기 교내 생활 안전지도		
8		2학기 개학식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안전사고예보 8월호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	4 HLOLTI 7 O		등·하교 교통안전교육	민방위 훈련(화재) 예정	
91	9월	소방안전교육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소방 훈련(예정)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안전사고예보 9월호		
		인권교육주간	현장체험학습	재난대비 안전교육	TILLERO OLT & 24 (T.T.) (4) TH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	욀	줄넘기 인증 주간	(2021학년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훈련(지진) 예정	학교시설 안전점검
		안전교육주간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예보 10월호	실험·실습 안전교육	실시
			추후 수정)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도 강화		31 01 01 TI TI 71 01 1 L
	~	친구 사랑 교육 주간,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111:		독서 교육 주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점검
				학교안전사고예보 11월호		결과 보고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717 ELW 72		방학 중 생활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2	2월 진로 탐색 주간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종업식 및 졸업식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2차)
				학교안전사고예보 12월호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2022학년도		방학 중 생활안전교육		
1월	학교안전계획 수립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안전사고예보 1월호		
				I .	1	

※ 안전계획은 학사일정 및 전국 공통 훈련 일정에 맞추어 수립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학교 안전교육과정에 반영
 - ▶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에 따라 안전교육 필수 이수 시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됨. (탄력적 운영 가능)
 - ▶ 2021학년도도 지침에 따라 연간 51차시→33차시 이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학교안전교육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용급차교육
	초 등	기 존	12	11	8	10	6	2	2
교 옥	학 교	변 경	10	9	3	5	5	0	1
시 간	유 치	기 존	13	10	8	10	6	2	2
	원	변 경		각 영역을	· 통합하여 33	하시 이상 (영	역별 최소 1치	시 이상)	
	횟수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당임교사)

- 학교 내·외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생생활지도 지침" 을 참고하여 실시
- ▶ [붙임 5. 학생생활지도 지침] 참고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
-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상시 지도.
- ▶ 조례 및 종례, 창체 및 관련 교과, 쉬는 시간 및 틈새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급 내 지도.
- **학교안전사고 예보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
- ▶ 나침반 자료와 함께 학급 내 상시 지도.
- ▶ 월별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

3)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계획

- □ 교과 연계 안전교육 (학년교육과정에 포함)
- 교과 연계 안전교육은 <u>각 학년에서 7대 안전교육 영역을 모두 반영한 51차시 이상의 안전</u>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실시할 계획임.
 - ▶ 2021학년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년별 계획 수립 및 운영.
- 안전교육은 가급적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schoolsafe.kr)의 교과연계 수업계획표 작성 프로그램 적극 활용
- ※ 교과연계 안전교육 작성 참조

학교안전정보센터 → 학교안전정책 → [표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작성

- □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안전교육
- 교과연계를 중심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정 운영(생존 수영 실시 계획)

- 생존 수영 실시계획
- ▶ 2020학년도 3학년 재학생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이론 학습으로 진행함. (실기 미운영)
- ▶ 2021학년도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예정.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학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 ▶ 물놀이 안전수칙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급 내 지도

5)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 실험·실습실 안전대책은 과학실 안전 매뉴얼 지침에 따라 실시
- ▶ 유해물질 및 과학실 장비(약품) 관리 방침 본교 과학실험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과학실험실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6)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를 기반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7)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 안전약자(요양호자)에 대한 안전지도는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안전대책 (별첨 2)" 을 참고하여 실시
- ▶ 새 학기 초, 안전약자(요양호자)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나. 재난대피훈련 연간계획

1)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 교육부에서 제공한 "2019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붙임 6)" 을 참고하여 아래의 "재난대비 훈련 연간 계획표" 를 작성
- ※ 재난대비 훈련 시 가능한 학부모들이 참가 또는 참관하여 학교의 안전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재	연간 학교 안전교육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전체 교직원	안전교육담당	
· ''' 난	화재대피훈련	현장훈련	전체 교직원과 재학생	행정실장	
대	황사 · 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안전교육담당	
비	복합재난대피훈련	사전교육 및	전체 교직원과 재학생	행정실장	
훈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현장훈련 등			
련	화재대피훈련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현장훈련	전체 교직원과 재학생	행정실장	소방서 합동
	지진화재대피훈련	현장훈련	전체 교직원과 재학생	행정실장	

※ 상기 일정은 전국 공통 훈련 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다.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2020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기준: 2020년)

전 교직원 대상 2021.2.28.까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완료. (개별, 의무)

- L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구분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을 (B/A) × 100
인원	50	11	61	50	11	61	100

- ※ 교직원 수는 2020 정보공시 현황에 근거함.
- ※ 사이버연수에서 체험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추진. 학교안전정보센터 및 학교 안전교육 지원 시스템(supportschoolsafe.kr)의 연수정보 및 개인이력 관리 적극 활용

2) 2021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3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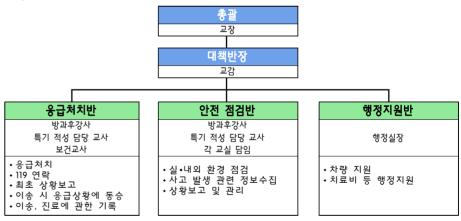
전 교직원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예정 (개별, 의무)

3. 교육활동 안전 강화

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방과후 부장)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대책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돌봄 운영지침 등에 따라 실시
- **본교 2021 은빛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
- 세부추진 계획
- 방과후학교 교실 응급처치반 및 안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수정하여 비치 활용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처리 시스템으로 구급상자 비치 및 보건교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안전관리를 위해 각 교실 담임교사 및 외부 강사는 교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

◆ 응급처치반 및 안전 점검반



- 기타 안전 관련 사항

- ㆍ외부 강사는 교내에서 반드시 교무실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착용하고 다닌다.
- ·방과후교육 담당 교사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SMS 문자 발송을 통하여 방과후교육 시간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 ·강사들은 매시간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미출석시 반드시 학교 및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의 등교 여부를 확인한다.
- ㆍ결석생이 발생 시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결석여부 및 이유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ㆍ지속적으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방과후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이 바로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ㆍ학교나 강사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결강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학부모 및 학생에게 통보하고 바로 하

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 ·방학중에도 교무실에 반드시 교직원이 상시 근무하여 비상 사태가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교육 강사는 수업시간(시작시간, 쉬는시간, 종강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에 방 치된 학생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해당학생들의 담임 및 방과후교육 강사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부탁하여 매일 학구내 순찰을 실시한다.
- ·임용된 강사를 대상으로 2월 중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이 때, 1년간의 운영 계획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과 동시에 강사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1년 중 수시로 안전교육에 대한 강조를 SMS을 통해 제공한다.
- · 방과후교육 담당 교사는 외부강사의 무단 결강시, 꼭 연락을 취하여 강사의 신변 안전에도 힘쓰도록 한다. (외부 강사의 비상 연락망 작성)
-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태풍, 지진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임시휴업일 조치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전대책

- 의부체험활동 안전대책은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 등에 따라 실시
-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u>2021</u> 학년도 각 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의함.

4. 학교 안전문화 확산

가.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 실천

- 학생 주도 안전 실천은 '학교 안전주간', '재난대응 훈련' 등에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2021학년도 재난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주간에 체험 중심의 참여형 계획 수립 및 실시

나.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6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6
- 2021 안전점검의 날 연간운영계획에 의해 실시

다.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5. 안전한 학교 시설 및 환경 조성

가. 학교 시설 안전점검

1)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2)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 관련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진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매주 안전점검 실시

3) 공사 현장 안전점검

○ 학교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월' 안전점검 실시(관련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나. 학교 시설 안전관리 및 조치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1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1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2)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계획을 작성(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2019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3.19)에 따라 관리 및 조치

[참고 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전기 전기사업법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출처에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산다간 전시간에 보기 회에상 등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사업법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증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증강 대상 주도법 수도법 소주관리자 교육(제36조) '반기1회 이상, "열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반기1회 이상, "열1회 이상 (제33조) '반기1회 이상, "열1회 이상 실시(제33조) '반기1회 이상, "원1회 이상 실시(제33조) '반기1회 이상, "원1회 이상 실시(제33조) '반기1회 이상, "원1회 이상 실시(제33조) '참전짜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 보인 중애인 보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임산부 편의 중애인 목으림 적정 설치(등법 시행령 제4조) 법률 중애인용 제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중애원 목교 등 생기원 본 및 피난설비 구비 조바리 생기원 및 반하시설 관리(법 제10조) 유지 및 안전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소바안전관리 (대정 제4조) 고바인전관리 (의절이 상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관리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안전관리 (의절이 상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안사 관리 지점(원1회 이상) -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양전관리 (인절이 어상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안사 관리 전 (의성)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양전관리 (인절이 어상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안사 관리 지점(원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양합된 공반 관리 (업 제 15조) 소방양전관리 (인절이 어상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안사 관리 전(원기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양합원점(원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5조) 소방양합원점(원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5조) 소방양합원점(원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5조) 소방양합원임점(원1회 이상) - 소방성장 보고(법 제15조) 소방양합원임점(원1회 이상) - 소방성장	건축	건축법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 건축물 철거 후 명실 신고(제36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실시(제65조) "내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사업법 ● 오산관리자 선임(제29조) ● 중강기 ● 승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 경기관(기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 강기 ● 상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자 건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 경기 ● 상강기 ●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주도시설 주도법 ● 수도법 ●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자주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용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장애인 노인 등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참전짜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시설 임산부 편의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참전짜거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된 노인 등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장애인 보인 등 장애인 도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장애인 적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 점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비원 전치(제3조) - 장비원 전체(제3조) - 장비원 전체(제3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자 설임(제3 제12조) - 소방안전관리자 설임(제3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훈련 - 소방안전관리자 설임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 기록보관(대정 제15조)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원 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훈련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원 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훈련 - 소방안전환경점(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훈련 - 소방안전환경점(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환경 보고(법 제19조) - 소방안전환경점(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환경 - 소방안전환경점(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훈련 - 소방안전환경점(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환경 - 소방전환경점(연1회 이상) - 소방서장 함등 환경 - 소방전환경 전체(전) - 소방서장 함께 전체 전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산전관리자 선임(제30조) 전기산전관리자 선임(제29조) 사업법 소리기관(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 선임(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기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전기회 이상 경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전기회 이상 경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전기회 이상 , "월1회 이상, "연기회 이상 "반기1회 이상 "반기1회 이상, "원1회 이상, "연기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1년대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법 장애인 노인 상대 영기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장애인 보인 상대 영기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장애인 보인 장애인 보인 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점전제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 보인 장애인 점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 점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중집에 관한 중해인용 대소변기 설치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경제 당도 등 강설비 적정 설치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경제 당도 및 만나실비 구비 소방시설설치 자리검계획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전기관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소방안전관리 등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리 등 자체검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안전관 등 환경점 당임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안전관 등 환경점 당임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안전관 등 환경점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안전관 등 환경점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증합정임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증합정임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증합정임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안전관 등 환경점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전 등 환경점 전 등 환경점점 전 등 환경점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전 등 환경점점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전 등 환경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전기 전기사업법			∘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사업법 - 오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 조심가스 (공급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증강기관리교육'(제16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증강기관리교육'(제16조) -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주도시설 - 수도법 - 수도법 - 수도법 (구도권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 하수도권점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 참애인 노인 (공장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 참애인 노인 (공장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 참애인 노인 (공장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조) - 장애인 전문자구역 설정(제17조) - 중집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조근로 적정 설치(등법 시행령 제4조) - 구조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목도 독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 제안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전자블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 (공자)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자리 및 안전 (공리에 관한 및 추위 장애 사항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소방관합 업명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기록 보관 (제36조)
대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사업법	전기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 사업법 - 오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 증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 열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 열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 주도시설 - 수도법 - 주도비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1번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용하는 인터넷교육 - 하수도 성 - 경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 장애인 노인 - 장애인 노인 - 장애인 접근로 적장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 용자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용자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용자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점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 목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전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 조방시설 소방시설설치 파나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유지 및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5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4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4조) - 소방안전관리 등 사업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중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사입법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응강기 승강기 () 수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 수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일 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기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주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후 15년 이상된 등 제거 이상 () () () () () () () () () (도시가스		,
응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일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주도시설 수도법 ' 수도법 '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자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 주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 장애인 도인 ' 장애인 도인 ' 장애인 도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참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구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정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구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아인용 대소변기 설치 - 강바간절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자위소방라 편성 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 * 연호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함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양점망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사업법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안전관리법 '증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수도법 수도법 수도법 수도비 의사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승강기	승강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안전관리법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경 대상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지상 수도시설 수도법 수도법 수도법 수도법 수도성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정화조 내부청소'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임산부 편의 ○장애인 노인의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임산부 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조방시설 관리에 관한 합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 장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전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수도시설 수도법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で인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시설	수도법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 하수도법 ** ** ** ** ** ** ** ** ** ** ** ** **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 시설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제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정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합률 - 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 장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장애인편의 장애인 노인			
장애인편의 시설 의산부 편의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이상에 관한 변률 ** 한 이 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구출입구에 활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 전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 소방시설 ** 지 및 안전 ** 유지 및 안전 ** 관리에 관한 합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에 관한 규정 ** ** 안사장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소방중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시설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조방시설 - 장아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제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유지 및 안전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12조) - 장위소방대 편성 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법률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유지 및 안전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정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유지 및 안전 유지 및 안전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조방시설 소방시설설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유지 및 안전 유지 및 안전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입뉼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설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유지 및 안전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법률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공공기관의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관리에 관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법률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공공기관의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ㅅ바 II 서	ᇫ바ᆡᄸᄸᅱ	
관리에 관한	고당시달		
법률			
공공기관의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소방안전관리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에 관한 규정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 ○ │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석면	석면안전	
관리법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시행령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어린이놀이시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놀이시설	설안전관리법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춬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보건법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시설사업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촉진	촉진법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관리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m'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표9-4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 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u>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u>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u>연간 정비계획</u>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점검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점검 내용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표9-4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설비
6개 분야	26개 항목

- 점검 절차 및 방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집계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된 집계표의 소요예산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도교육청 에 집계표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 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

다. 통학로 안전관리

- 학생 안전 통학로 만들기 교문 앞 통학로 300m 이내 스쿨존
 - 학교 교내외 위험지역 사전 교육 철저
 - 자전거 통학 금지
-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조
 - 교직원, 녹색어머니(은빛교통봉사단),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 주변 등하교 안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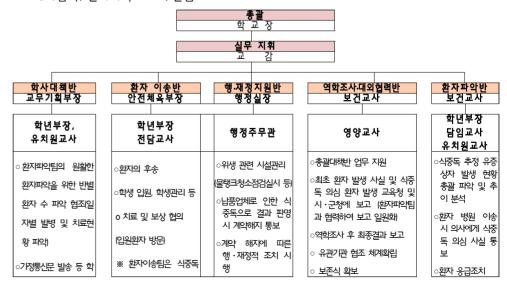
- 등하교 시간대 교내 외부 차량 진입 관리
- 통학로 운전법규 준수 홍보
-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
 - 전 학년 교육과정 내 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 체험중심의 교통안전교육 권장

라. 학교급식 안전관리

- 학교급식 경기도교육청 지침·매뉴얼 등에 따라 실시
-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행정실,영양교사)
-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행정실에서 수령함.
- 물품 운반차량 교내 진입 금지. 주차장에서 물품 수레로 이동.
- 식자재 운반 차량은 학생들이 등교시간 이전 물품 하차 완료
- 식자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하여 영양교사의 관리 하에 급식실에서 수령함
- 보관구역(식료품, 유해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방침(영양교사, 과학정보부장)
- ▶ 식료품 관리 방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 재표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 ▶ 유해물질 및 급식실 세제,소독제 관리 방침 본교 **급식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보관장소 지정, MSDS(물질안전) 교육 실시

○ 학교식증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유영(영양교사)

▶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환자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대외현력, 환자파악으로 구부됨



부모 협조 안내 및 수 업결손 대책 마련 등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 등에 따른 업무 처리

·학운위 관련 업무 협조

사고 발생 시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 소규모 식중독 사고 로 이송할 환자가 없을 경우 다른 팀의 업무를 지워하도록 업무분장 ○업체 선정에 따른 행 정적 절차 시행

□납품업체 현황 등 관 련 자료 제공

○위생 관련 시설관리 (정수기 소독 현황점검실시 등) ○학교 시설 방역 소독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현조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아저한 급시제공

○최초 및 종료시 까지 일일 집단한 자 발생보고 (역 학조사 협력팀과 협력하여 보고 일 원화

○환자 역한조사 협조 ○보건·위생 교육 실시

마. 학교 출입관리

- 학교 출입관리 지침·매뉴얼 등에 따라 실시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문객의 학교출입 및 교내 차량 통행 관리 방침과 절차 (안전담당교사계획/ 행정실 제반 업무 실행)
- 정문은 통제하고 건물 출입구는 개방한다.
-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학교를 방문하는 자는 **배움터지킴이 또는 행정실을 방문**하여 일반출입증 또는 일일방문증을 작성 후 패용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작성된 본교의 2021학년도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운영 계획에 따라 관리함

6.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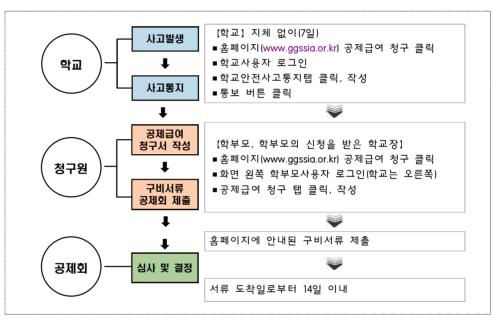
가. 상담 및 치료 지원

○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지원 절차(2021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제2장 참조)
- ☑ 공제 급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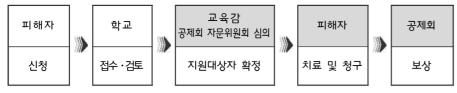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처리 절차

▶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신청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복구

-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 절차(2021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참조)
- [전 기관]
- 공제회 가입절차 진행 전 기관별 공제회 가입대상(보유·관리물품 및 재산) 현행화를 실시하 여 피해복구비 미지급 및 공제 가입비 과다지출 사전예방
-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복구비 지급신청
 -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 절차 ☑
 - 재난발생 → 공제회로 재난 발생신고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경기인천지부 ☎ 02-781-0152
-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제도는 〈별첨 4〉**를 참고하여 추진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각지대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 연구시설공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료 납부	행정실	경기도교육청	시교육청	
사고통지 담당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	업무담당자	행정실	
보상청구 담당	학부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학교안전공제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보건교사)

- 36 -

부록

[붙임]

- 1. 2021학년도 은빛초 교직원 비상***(2021.3.)
- 2.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3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 4.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5. 학생 생활지도 지침
- 6. 2019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 7.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 1. 은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전 교육과정 (2020학년도)
- >> 출처: 은빛초병설유치원교육과정
- 2.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안전대책
 - >> 출처: 경기(2013) 안전교육길라잡이
- 3. 안전사고 관리지침
- >> 출처: 연구진 작성
- 4.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제도
- >> 출처: 연구진 작성

2021학년도 은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전교육과정

가. 기본 안전교육 계획

〈법적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교육)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아동안전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제6~7조(안전점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제 4806호, 2014.11.10.)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08(2021.1.25.)
-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



목 적

- 1) 유치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확립한다.
- 2)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지도 및 교육으로 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3)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른다.



방 침

- 1)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2) 안전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실시하고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한다
- 3)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인터넷사용, 아동학대예방, 성폭력예방, 양성평등교육 등)
- 4) 가정통신문 배부를 통해 유아들이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 6)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한다.
- 7) 나ㆍ침ㆍ반 안전 컨텐츠 등을 활용하여 하루 5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8) 원내 안전관리 체제 구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9) 직업안전교육은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10) 안전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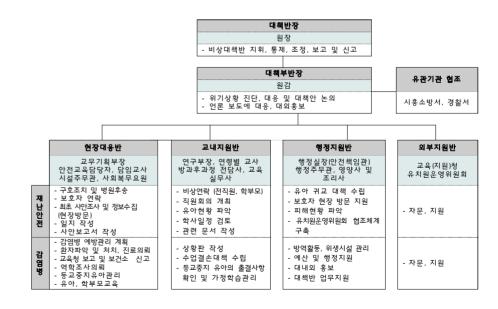


세부 추진계획

1) 연간 안전 관리 계획

구분	세 부 추 진 내 용	시대상	시기
유아 안전지도	● 7대 안전교육 실시 - 생활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 재난안전교육 - 직업안전교육 - 왕급처치교육 ● 현장체험학습 시 교통안전 교육실시 ● 재난 대피 훈련(화재·지진·민방위훈련)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전체	총 44시간 실시 연 13회 연 10회 연 8회 연 10회 연 6회 연 2회 연 중 연 6회
안전관리	 행사 및 현장학습 시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 휴대 사전 안전교육 협의 실시 가벼운 사고 발생 시 유치원 약품 이용 보건실과 연계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응급처치 동의서 - 연령별 비치 교직원 비상연락망 비치 	교직원 교직원 담임 안전 담당 담임 안전 담당	현장학습 시 연중 연중 연중 연중 3월 연중

2) 유치원 비상대책반 구성(감염병 대책기구와 일원화)



3) 함께 하는 안전생활 계획-유아,교사,학부모 대상

▶ 초등학교 안전훈련과 함께 실시하며, 추후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내용	실시
전문기관에 의한	재난(소방)안전	• 시흥소방서	4월
안전 체험교육	교통안전	• 시흥경찰서	5월

4) 안전교육 실시 주기 및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 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안전
횟수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학기당 1회	학기당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이상	이상
교육시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총 44차시)	13차시	10차시	8차시	10차시	6차시	2차시	2차시

5) 7대 안전교육 연간 계획(전체 44시간)

[]학기]

월	주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1			사이좋게 지내요				
	2	화장실 안전하게 이용하기						
3	3	끼임사고 조심하기				안전하게 대피해요 (화재대피훈련)		
	4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약속			제대로 먹어야 약이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5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1	실종, 유괴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친구를 때리지 말아요				
	2		안전벨트를 꼭 매요					
4	3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요				불이 났을 때 숨지마세요 (소방합동훈련)		
	4			나의 감정은 소중해요	인터넷, 화가 났어요			
	1	미끄러운 곳은 조심해요						
5	2						일터의 안전시설을 알아보아요	
	3			재난대응안전한국	국훈련 / 화재 및 2	지진대피훈련		
	4							도와주세요

						T.	
							119
	1		안전한 장소에서 놀기		엄마, 아빠 담배는 싫어요!		
	2		차 뒤에서 놀지 않아요			땅이 흔들려요 (지진대피훈련)	
6	3	식중독 예방법 알기		길을 잃었어요			
	4				나는야 건강모델		
	5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				
7	1			소중한 내 몸을 지켜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2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요			인터넷 바르게 사용하기		

[2학기]

월	주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1	길을 잃었을 때 도움 요청하기						
	2	학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인터넷 예절을 알아봐요			
9	3			나쁜 말과 행동을 알아보아요				
	4		바퀴달린 것들의 안전			안전하게 대피해요 (화재대피훈련)		
	5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해요			
	1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10	2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3	유괴, 미아 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4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대피훈련)		
	1		보호장구 갖추기					
11	2	안전지킴이 집은 무엇일까요?						
	3						안전이	

							최고에요	
	4					건물 옆은 위험해요 (지진대피훈련)		
	1		안전한 지하철 이용					손가락을 다쳤어요
	2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12	3			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4		사각지대와 내륜차, 외륜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올바른 습관을 알아보아요			
7 (차		13	10	8	10	6	2	2



4 기대 효과

1)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교사와 유아 모두 안전의식을 강하게 고취할 수 있다.

총 44시간

- 2) 유치원 안전교육이 가정, 사회와 연계되어 안전 의식이 생활화, 습관화 될 수 있다.
- 3) 사전에 철저한 예방지도 및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나 · 침 · 반 안전교육 계획



- 1) 하루 5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상시 안전교육을 통하여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안전생활 의 습관화를 도모한다.
- 2) 생활 속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1) 매일 1회 이상 5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나·침·반 교육을 실시한다.
- 2) 나·침·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내 각종 안전교육 시 활용하고,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반복학습을 한다.



▶ 세부 추진계획

대상	월			비고			
교사	3, 9		나				
유아	3 ~ 12	월 생활안전 - 교육청 7		수 재난안전 만 안전교 £		금 폭력예방/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 매일 5분 자투리 시간을 활용 -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 여 교육 - 동일 주제를 심화반복 학습

4 기대 효과

- 1) 교사가 활용하기 쉽고,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자료로 학교 안전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 2) 월별 주제별 반복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로 안전사고 위기 발생 시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대처능 력을 신장할 수 있다.
- 3) 실제상황을 가정한 상황별 교육훈련으로 위기상황 시 안전사고별 대처능력 신장으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다.